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2014. 11. 6. 제정

2025. 6. 2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 제71조 제7항에 따라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대학교 학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조직

제3조(위원회) ① 본 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전문박사학위과정 학사운영위원회(이하 “학사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 25.>

② 본 위원회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하고, 본 과정 주임교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을 포함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주임교수 등)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업무를 담당할 주임교수 1인을 둔다.

② 주임교수는 교과목 개설, 수업진행, 지도교수의 제청 기타 각종 학사업무를 운영·관리한다.

제3장 입학

제5조(입학자격)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은, 국내·외 석사학위(전공 불문) 혹은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내·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2. 법률 유관 분야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법률 유관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학과 관련한 전공 학위를 취득한 자 <개정 2021. 2. 4.>

② 전항 각호의 입학자격 요건에 관한 해당 여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과정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 2. 4.>

제6조(선발인원) 전문박사학위과정의 각 학기 선발인원은 동 과정의 학사운영위원회가 총 정원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입학전형)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에 의하며, 본 과정 학사운영위원회의 주관과 책임하에 진행한다.

② 입학전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과정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편입학)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과정 및 학과(전공)의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수료자 포함)에 대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

② 편입학의 전형시기, 전형절차 및 전형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과정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재입학

제9조(등록) ①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7. 8.>

② 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4회 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얻는다. 다만, 편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본 대학원에서 최소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얻는다. <개정 2021. 8. 5., 2024. 7. 8.>

제9조의2(등록금)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초 정규등록 시에는 수업료를 연구등록 시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입학금은 입학 및 재입학 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 7. 8.]

제10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② 휴학기간은 1회 2학기, 통산 6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③ 휴학자는 휴학 중에도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이전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제12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규정 위반자

제14조(재입학)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학연한 내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원장의 허가를 얻어 재입학 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의 허가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 제2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특례재입학) 제16조에서 규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특례재입학의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0. 30.>

제5장 학사운영

제15조(학기)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기는 본 과정 학사운영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매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

② 전문박사학위과정은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당 취득학점의 상한은 6학점으로 한다.

제16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개 학기로 한다.

②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34조 제1항 단서의 논문 제출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0. 30.>

제17조(수료학점)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과목의 학점은 24학점(연구학점 제외)으로 하며,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연구학점 제외)로 한다. <개정 2016. 9. 12.>

② 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연구과목 포함)은 1과목 당 3학점으로 하며 주당 1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③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27.>

④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과목의 이수학점은 제1항의 학기당 이수가능 상한학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6. 27.>

제18조(연구학점)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하여는 논문지도교수로부터 2개 학기에 걸쳐 총 6학점 이상의 연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연구학점은 1학기당 3학점으로 한다.

③ 연구과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 학기 수업개시 이후 일주일 이내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과목 수강생은 논문연구보고서를 매 학기 수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연구평점을 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교과목, 이수과목 및 선수과목 요건)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본 과정 교과목 및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본 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6.>

② 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앙대학교 타 대학원의 교과목의 경우 본 과정 학사운영위원회 심의와 원장의 승인을 거쳐 수강하는 방법으로 재학 중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6., 개정 2024. 12. 9.>

③ 수강생은 특정 전임교원 1인의 교과목을 12학점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단 연구학점은 예외로 한다.

④ 비법학사 또는 비법학석사학위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 취득학위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9학점까지 선수과목 수강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의 선정은 원생의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본 과정 학사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0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1차 학기내에 선정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9.>

제21조(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 ① 본 대학원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는 7등급으로 하며, 등급별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9. 1. 25.>

등 급	취 득 점 수	평 점	100점 만점 기준 환산점수
A ⁺	95점 이상	4.5	100
A	90 ~ 94	4.0	94.28
B ⁺	85 ~ 89	3.5	88.57
B	80 ~ 84	3.0	82.85
C ⁺	75 ~ 79	2.5	77.14
C	70 ~ 74	2.0	71.42
P	PASS	없음	없음
F	0 ~ 69	-	-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하는 본 대학원 학생에 대한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7. 7. 25.>

제22조(재수강) F학점을 받은 과목에 대하여는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조건으로 해당 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제23조(학점인정)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에서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취득 학점을 인정한다.

② 전문박사학위과정에 편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전적 대학원의 교과목 중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목 동일성 여부는 학사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1. 8. 5.>

제24조(강좌개설) ① 본 과정에 개설된 과목의 수강생이 2인 이하인 경우 당해 과목은 폐강한다.

② 본 과정에 강좌를 개설할 경우 교수 1인당 학기당 1과목을 초과하여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21. 8. 5., 2022. 2. 3.>

③ 본 과정에 개설된 강좌와 동일한 과목명의 강좌를 당해 학기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21. 8. 5., 2022. 2. 3.>

④ 본 과정의 강좌를 개설하는 교원은 당해 학기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강좌를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21. 8. 5., 2022. 2. 3.>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과목을 개설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이때, 불가피한 사유는 전문박사학위과정 전공운용 및 강좌개설에 관한 지침 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19. 1. 25., 2021. 8. 5., 2022. 2. 3.>

제25조(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의2 (교과과정 운영) ① 수업은 학기당 16주를 원칙으로 하되, 본 대학원 학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축소할 수 있다. 수업일수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강의의 진행은 수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고 학기당 강의시간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학습, 실무실습 등의 방법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1.]

제26조(학생의 교수 연구에의 참여) ① 전문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연구프로젝트의 유급 연구보조원으로 연구과목 담당지도교수 내지 논문지도교수의 연구에 1학기 이상 참여하여 연구성과 산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관련된 연구과목의 지도가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연구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연구 참여자는 매 학기 수업개시 일주일 이내에 담당 지도교수의 연구주제와 관련해 연구학점 취득을 위한 연구 참여 부분을 선정하여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 참여자가 담당 지도교수의 연구 참여에 의해 연구과목 학점취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 수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 참여 부분에 대한 논문지도교수의 최종 평가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출석)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과목의 성격상 강의 참여가 수업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건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과정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적 출석일수를 강화할 수 있다.

제28조(교과목 개설) 학기별 개설 교과목은 본 과정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3. 1.>

제6장 논문심사

제29조 (학위 부여 전공명칭) 전문박사학위과정에서 부여되는 학위명은 아래와 같다.

헌법, 민법, 형사법, 민사소송법, 상사법, 행정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국제법, 국제사법, 법철학, 사회법, 조세법, 지식재산권법

제30조(논문계획서 제출)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전공과목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출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제출된 논문계획서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때는 논문계획서를 새로 제출하고 제출학기를 포함하여 1개 학기 이상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1조(논문제출 자격시험) ①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전공 종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 6. 27.>

② 전공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전문박사학위 과정생은 2차 학기 이상 수료해야 한다. <개정 2019. 12. 16., 2020. 11. 5.>

③ 전공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④ 전공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본 대학의 교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로 하며,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12. 16.>

⑤ 전공 종합시험은 2과목으로 하고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6.>

⑥ 등재(후보)지에 주저자(단독 혹은 공저)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전공 종합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제32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응시할 수 있다.

제33조(논문제출 자격) 전문박사학위 청구논문(이하 ‘박사학위논문’이라 칭한다)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6., 2025. 6. 27.>

1. 전문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 논문지도교수로부터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

3.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합격하거나 혹은 이를 대체하는 논문요건을 충족한 자 <개정 2019. 12. 16.>

4.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과목을 이수하고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 <개정 2022. 2. 3., 2025. 6. 27.>

5. 논문제출 기한(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제출시 재학연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연구년,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등의 불가피한 사유 또는 종합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학원 수료 후 군 입대로 논문제출 기한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

제33조의2(논문제출 절차)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사 일정에 따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제출승인서
2. 박사학위 논문 심사완료 인준지 및 학위논문 등록 확인서
3. 연구실적 인정서
4.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본조신설 2025. 6. 27.]

제34조(학위청구논문 제출기간과 제출시기 등) <삭제 2025. 6. 27.>

제35조(외국어 논문) 전문박사학위 논문의 언어는 외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논문지도교수의 제청에 따라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6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가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6. 27.>

② 심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며, 교외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37조(심사위원장) ① 전문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결과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심사위원 교체 금지) 제36조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의 질병, 해외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제39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출석으로 진행한다.

② 심사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를 의뢰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심사결과 논문내용이 학위논문으로서 불충분하여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연구를 명하고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논문심사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전원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였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 이내에 심사용 논문을 다시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39조의2(논문지도비 및 논문심사비) 학위논문 지도교수 또는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논문지도비: 박사학위 논문작성을 지도하는 지도교수에게 지급하는 대가
 2. 논문심사비: 박사학위 논문을 심의하는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대가
- [본조신설 2025. 1. 31.]

제40조(논문최종작성) 논문 제출자는 논문심사 종료 후 1월 이내에 논문심사에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논문의 공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합격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7장 학위의 수여와 취소

제42조(학위수여) 전문박사학위는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중 심사위원의 최종 인준을 받은 논문을 소정의 기간 내에 원장에게 제출한 자에게 본 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여하며, 본 대학원 학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위기를 부여하고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문학위기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9.>

제43조(수여학위 취소) 전문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상관없이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11. 5.>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 개정 규정 중 제31조 ②항은 2015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1. 2. 4.>

본 규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8. 5.>

본 규정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 2. 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 개정 규정 중 제33조 제4호는 2022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2. 10. 30.>

본 규정은 202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7.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12.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 1. 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 6.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지도교수 변경원

경 유	주임교수

결 재	담 당	팀 장	부원장	원 장

No. _____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

학과		전공		학차	
성명		학번		성별	남.여
입학년도	년 전.후반기	논문제출예정년도		년 전.후반기	
변 경 사 유					
전임지도교수명 : (인)		후임지도교수명 : (인)			
		후임지도교수명 : (인)			

※ 지도교수를 변경 한 후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에 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학위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귀하